

수원지방법원 2021. 5. 28 선고 2020가단52552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국병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노

변 론 종 결 2021. 5. 14.

판 결 선 고 2021. 5. 28.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C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699,619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4가합63783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7. 7. ‘C은 원고에게 205,000,000원 및 그중 1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7. 1.부터 2016. 7. 7.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5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7. 6. 29.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C은 2017. 12.경부터 2018. 8.경까지 D 주식회사, ‘E’를 운영하는 F, ‘G’을 운영하는 H(이하 이를 통틀어 ‘D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토사 등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토사 등을 운송하였으며, D 등은 C의 지정에 따라 2017. 12. 13.부터 2018. 8. 21.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피고 명의의 I조합 계좌(계좌번호 : J, 이하 ‘이 사건 계좌’라고 한다)로 운송비 합계 41,699,619원을 송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D 등으로부터 자신이 받아야 할 운송비 합계 41,699,619원을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는바, 이는 원고를 비롯하여 C에 대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C과 피고 사이의 위 각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41,699,61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어머니인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한 다음 K으로 하여금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이고, C으로부터 위 돈을 증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채무자가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금전에 관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채무자와 다른 사람 사이에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다른 사람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도록 ‘증여’하여 무상 공여한다는 데에 대한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위와 같은 송금행위가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는 채권자에게 있다. 한편,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에 그 송금은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으로서, 과세 당국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하여 일정한 인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 소유의 금전을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할 것을 승낙 또는 양해하였다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예금계좌를 사실상 지배하도록 용인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송금인과 계좌명의인 사이에 그 송금액을 계좌명의인에게 위와 같이 무상 공여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쉽사리 말할 수 없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D 등이 C의 지정에 따라 2017. 12. 13.부터 2018. 8. 21.까지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운송비 합계 41,699,619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나,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14년경부터 2018. 8.경까지 피고의 어머니인 K과 동거하였고, K은 2014. 1. 2. C으로부터 200,000,000원을 증여받아 해당 금원으로 화성시 L건물 M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L건물 N호를 매수하는 등 상호 간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에 있었던 점, ②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2015가단136247호로 K을 상대로 위 200,000,000원의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6. 9. 6.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7. 18. 확정된 점, ③ 한편 이 사건 계좌는 2017. 12. 15. 개설된 것으로, 2018. 8.경까지의 입금내역은 대체로 D 등에 의한 것이고, 출금내역 중 K 내지 C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부분도 상당수 확인되는바, 이는 K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여 주었고, C이 K과의 의사연락에 따라 위 계좌로 금원을 송금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체로 부합하는 점, ④ 특히 피고는 K으로부터 ‘자신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기 어렵다’는 요청을 받았다고 주장하는바, 앞서 본 C과 K의 관계, 원고와 K 간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의 경과 등에 비추어 K이나 C이 위 판결에 따른 집행이나 다른 채권자들의 추적 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계좌 개설 및 사용을 부탁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해 보이는 점, 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계좌에서 수시로 금원을 인출하고, 이 사건 계좌로 상당 금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K이 아닌 피고가 이 사건 계좌를 실제로 지배관리하였다고 주장하나, K이 이 사건 계좌에 연동된 카드나 통장을 이용하여 입금, 출금을 하더라도 거래내역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므로 반드시 피고가 입금 및 출금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입금내역 중 상당 부분은 K과 C 간의 동거관계 및 앞서 본 41,699,619원의 송금이 마무리된 2018. 8.경 이후의 것이며, 피고와 K과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가 해당 계좌로 일부 금원을 송금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41,699,619원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계좌에 입금된 금원을 실제로 사용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계좌를 지배관리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두루 고려하여 보면, 앞서 본 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이 위 41,699,619원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서영

별지

C의 B에 대한 증여계약 내역

번호	증여 방법	증여 일시	증여금액	비고
1	이 (주)으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임을 금 피고 게 확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증여	2017-12-13	3,000,000원	
2		2018-01-03	3,000,000원	
3		2018-01-15	2,401,233원	
4		2018-01-22	5,000,000원	
5		2018-03-16	3,000,000원	
6		2018-05-15	3,558,111원	
7		2018-06-15	3,000,000원	
8		2018-07-03	3,240,000원	
9		2018-07-20	2,262,905원	
10		2018-08-17	1,047,470원	
11		2018-08-17	189,900원	
합계			29,699,619원	
1	이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임을 금 피고 게 확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증여	2018-03-03	2,000,000원	
2	이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임을 금 피고 게 확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증여	2018-03-31	3,000,000원	
합계			5,000,000원	
1	이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임을 금 피고 게 확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증여	2018-02-12	4,000,000원	
2	이로부터 받아야 할 덤프트럭 운임을 금 피고 게 확로 입금시켜 주는 방법으로 증여	2018-08-21	3,000,000원	
합계			7,000,000원	
증여액 총합계			41,699,619원	